

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28.

발의자 : 김진표 · 이상현 · 양기대  
신정훈 · 전혜숙 · 김철민  
안규백 · 조승래 · 윤영찬  
한준호 · 한기호 · 김병주  
이현승 · 성일종 · 박성중  
송갑석 · 기동민 · 정성호  
최형두 · 유기홍 · 윤후덕  
의원(2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“과학기술전문사관”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「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

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, 그 밖에 현행 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」(의안번호 제235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“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”를 “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”로 한다.

### 1의2.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

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“6년으로 하고”를 “6년으로 하고,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4년으로 하며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”를 “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의2.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

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“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”를 각각 “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의3.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제26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2의2.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

5. ~ 7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 1. <u>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</u> 를 졸업한 사람	-----.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----- -----. 1. <u>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</u> <u>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</u> -----
2. ~ 8. (생 략)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2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
4. (생 략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생 략) ② 제11조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 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	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u>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</u> <u>교의 제4학년생</u> 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	4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사관학교, <u>육군3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	가. ----- <u>육군3사관학교</u> ,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, <u>육군3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육군3사관학교</u> ,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</u> ----- -----
4의2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(현행과 같음) 4의3. <u>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</u>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

	<u>득한 사람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진급 최저복무기간) ① ~	제26조(진급 최저복무기간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(期)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의2.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